사 업 명

(74)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(2231-30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	23	인구정책실		080	08B
명칭	일반회계	보건복지부	노인정책관		사회복지	노인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2200	2231	303	
명칭	노인의료보장	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	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0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	2023년 예산	202	4년	증감	
71 11 6	결산	본예산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노인장기요양보험	2.022.602	2 244 640	2 407 649	2 407 649	252.000	11.2
사업운영	2,032,693	2,244,640	2,497,648	2,497,648	253,008	11.3

4. 사업목적·내용

- (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)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여,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
-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58조에 따라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하는 법정지원금(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 상당)
- (공무원·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) 공무원·사립학교 교원의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부담분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- (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의료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*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(서울 50%, 기타지역 80%)
 - * 이재민, 의사상자, 국가유공자, 입양아동,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, 북한 이탈주민 등
- (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)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
- (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·운영)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, 제11조, 제35조의2,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(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)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조, 제6조, 제8조부터 제11조까지,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·피부양자의 자격취득·상실,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·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험료"는 "장기요양보험료"로, "건강보험"은 "장기요양보험"으로, "가입자"는 "장기요양보험가입자"로 본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(장기요앙기관 재무·회계기준)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(이하 "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장기요양기관 중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(국가의 부담)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, 의사소견서 발급비용,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(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)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1의 2「의료급여법,제3조제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: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 - 2.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: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.
 - 가. 국가부담분 :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 보조율에 따른 금액
 - 나.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: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
-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(보험료의 부담)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. 다만, 직장가입자가 교직 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, 제3조제2 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,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.

- 1.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
- 2.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- 3. 직장가입자가 교직원(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

② 추진경위

- ('01.8.15.) 고령화시대 대비,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
- ('07.4월)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정·공포 ('08.7월부터 제도 시행)
- ('12.7월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(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)
- * 3등급 인정점수 완화: (기존) 55~75점 → (개선) 53점~75점
- ('12.9월) "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" 수립·발표
- ('13.7월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(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)
- * 3등급 인정점수 완화: (기존) 53~75점 → (개선) 51점~75점
- ('14.7월)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(3등급 →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) 및 치매특별등급(5등급) 신설 관련 시행령·시행규칙·고시 개정
- ('16.5월)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확보 마련 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·회계기준 개정('16.5.) 및 관련 시행규칙 시행('18.5.)
- ('18.1월) 경증치매환자 "인지지원등급" 신설
- ('18.2월) "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" 수립·발표
- ('18.7월)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감경대상 및 감경율 확대
- * (기존)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대상 본인부담 50% 감경 → (변경) 건보료 기준 하위 25% 대상 60% 감경, 하위 25~50% 대상 40% 감경
- ('18.12월)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법적 근거 마련('25. 시행)
- ('19.6월)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
- ('21.12월)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('23.6월 시행)
- ('22.10월)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(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2.5명 → 2.3명)
- ('23.8월) "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" 수립·발표

6. 주요내용

- ① 사업규모
 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 - 사업기간 : '08년~ (단년도, 계속)

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, 보조

- 사업시행주체 :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, 사회보장정보원

- 사업 수혜자 : 일반 국민(노인 등)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 ·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 · 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4예산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	보조	사회보장 정보원	972	100%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

7. 사업 집행절차

